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북한 외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통일부장관의 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, 교육지원의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변경함(안 제 24조제1항 및 제3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